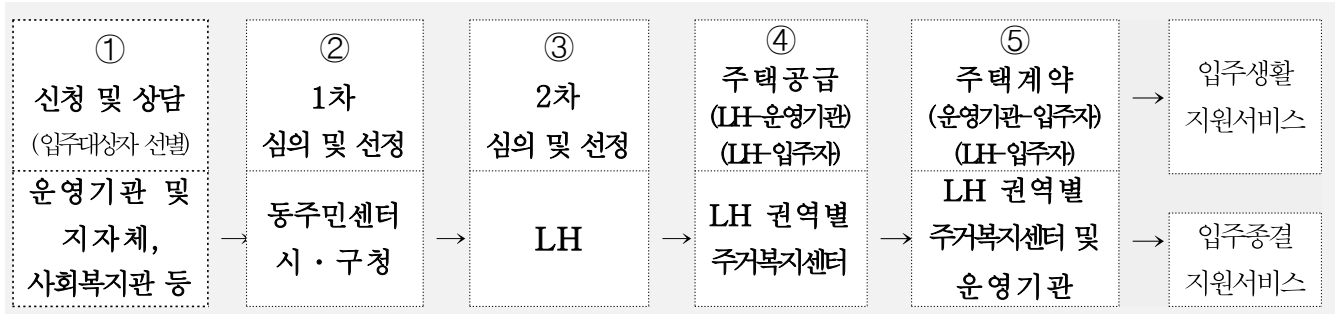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 절차(2019)

□ 입주 절차



□ 입주 자격

○ 비주택 거주

-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등'에 옥탑방, 찜질방 허용 : '17년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1473 문서 참고



○ 소득 등 재산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총자산가액	소득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 (가구원수별)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1억 9600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499만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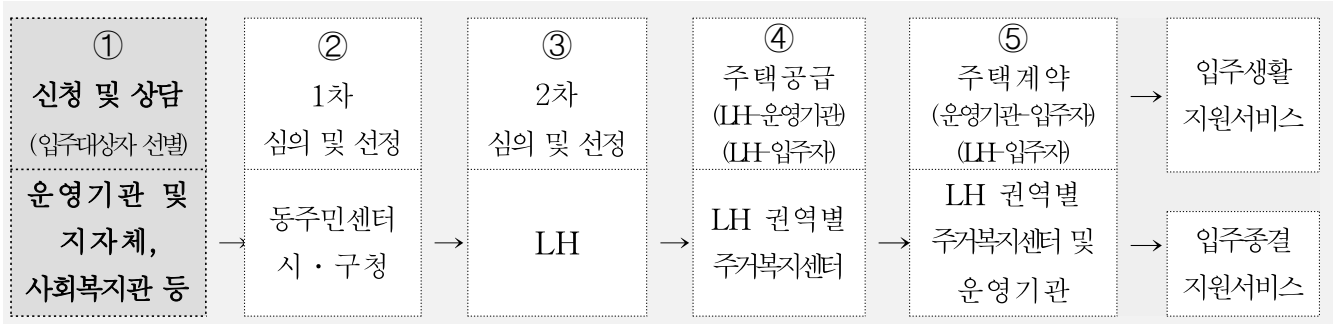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1,620,544원	2,160,725원	2,700,907원	3,082,601원

· 소득기준은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조정(소득 상승)

① 신청 및 상담

- 최소 3개월 이상 비주택 거주자 중 각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 조사, 주거취약계층 입주자격을 기본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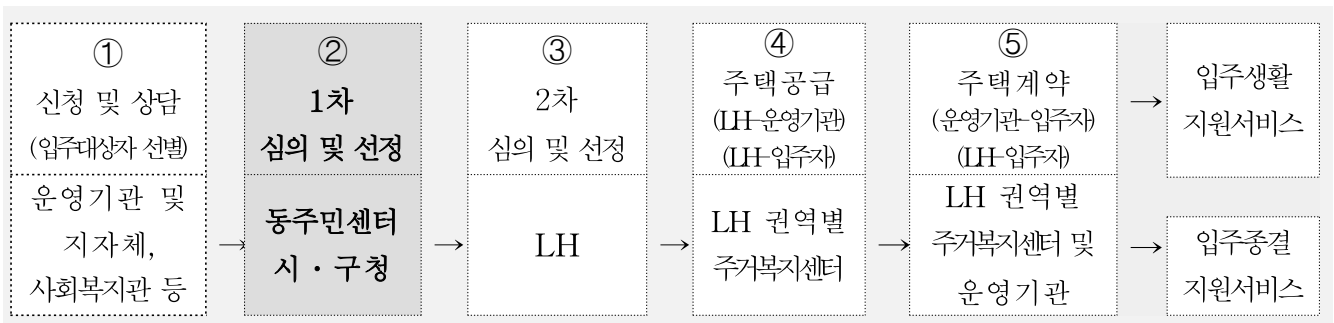
- 노숙인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입주대상자의 상담기록이 최근 3개월 간 1건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사례관리동의서에 기록등록과 보존에 대한 사항 명시. 노숙인정보시스템을 사용)

※ 기관의 경우 상담자의 근로 성실성, 저축액 확인,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선별

② 1차 심의 및 선정(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운영기관 및 입주자 발굴 기관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신청자의 기초자격(거주지, 재산요건)조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 제4조에 명시된 '입주신청서'(별지1), '자활계획서'(별지2) 문서에 신청자 정보를 기입하여 비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서류를 받는 지자체의 기준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는 비주택의 행정 주소를 기준.



- 별지1, 2 외 주민센터 직원에게 소득금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주민센터 직원은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 후, '입주자격기초조사서'(별지 3)를 작성 및 취합하여 서류들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발송한다.
 -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받은 입주신청서류 들을 지침 제9조(입주대상자 선정 등), 제10조(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근거. 자격조건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심의하고 '입주자선정평가표'(별지 4)를 작성. 입주자로 선정된 명단을 LH 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한다.
- ※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권고사항임

(별지 1)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 입주자 현황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7891234
주소	서울시 00구00동000번지, 000호	비주택거주기간	0개월
성별	✓남 _여	병역	✓군필 _미필 기타()
결혼여부	_기혼 _미혼 ✓이혼 _별거	자녀	남 (1)명, 여 (1)명

◎ 의료현황

장애여부	_없음 ✓있음(□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알코올 의존증 여부	_없음 ✓있음 (■폭음형 □지속형)	현재질환	_없음 ✓있음(현재가지고 있는 병명을 간략하게 기입)
의료급여	■1종 □2종 □기타	장애인 등록여부	_해당없음 ✓해당됨(1급)

◎ 취업현황

취업업종	일용직		직장명/연락처	000인력/전화:02-0000-0000		
월급여	(00)만원		총근무기간	0000.00.00 ~ 0000.00.00 (00)개월		
4대보험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직책	직책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과거 직업	연도	2000년	2000년	2000년	20 년	20 년
	직종 (기간)	청소 00.00~00.00까지	경비 00.00~00.00까지	현장일용직 00.00~00.00까지		
실직원인	기간만료	기간만료	근로중			

◎ 저축현황

저축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약저축 □예금 <input type="checkbox"/> 청약예금 □기타	총저축 금액	000만원	자산	(저축금액을포함 한 총자산)만원
저축액(월수입대 비비율)	월 00만원(0%)	주요지출내역 (별지사용가능)	<input type="checkbox"/> 임대비 (숫자로 표시 원)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숫자로 표시 원) <input type="checkbox"/> 부채상환 (숫자로 표시 원)		

◎ 입주신청자 가족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월소득액	직업	동거여부
홍길동	123456-7891234	서울시 00구00동000번지, 000호	본인	00만원	일용직	
홍길순	123456-7891234	상동	배우자	0만원	주부	동거
홍일남	123456-7891234	상동	자	0만원	학생	상동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신청	- 신청서, 자활계획서
소득	- 소득확인 증명서류(월급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택 1
가족·주거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거주사실확인서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구성전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포함
재산확인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건강상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별지 2)

자 활 계 획 서

1. 이 자활계획서는 입주신청인의 주거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활 등을 돕기 위해 입주신청자와 주민센터(운영기관)간에 합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 약속입니다.

입주신청자	홍길동	작성일	20000.00.00
상담자	아무개	운영기관	00기관
영역	생활현황	자립계획	
경제,직업	현재 신용 상태와 부채 상태, 그리고 현 근로 상황을 간략하게 기입 한다.	주거지원을 받은 후 앞으로의 경제생활과 근로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	
가족,생활	현재 가족 관계와 주거생활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 한다.	주거지원을 받은 후 앞으로의 가족생활과 주거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	
건강,장애	건강상태와 장애등급 여부를 기록한다.	주거지원을 받은 후 앞으로의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	
기타	위 사항 중에 기록을 다하지 못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 한다.		

2. 이 자활계획서는 2019 년 월 일부터 2020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는 계획 성취 정도를 평가하여 자활계획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3. 자활계획서의 자립계획을 상호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주신청자 : _____ 서명)

상 담 자 : _____ 서명)

(별지 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 신청인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0000년00월00일
-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 000호
- 연락처 : (신청인) 010-0000-0000
- (운영기관) : 00-0000-0000

□ 입주신청자격 (해당란에 기재, V표)

항목	세부기준	조사결과	적합여부 (적, 부)
주거 형태	주거형태 적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 방(), 비닐하우스() ▪ 고시원·여인숙 (✓)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옴막 등 () 	적
무주택	주택의 소유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임차 (✓) ▪ 무료임차 () 	적
토지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가 _____ 원 ▪ 토지 없음 (✓) 	적
자동차	차량기준가액 2,499만원 이하 * 장애인용·영업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기준가액 _____ 원 ▪ 자동차 없음 (✓) 	적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소득액 <u>00</u>만원 	적

(별지 4)

입주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평가결과(배점란에 해당점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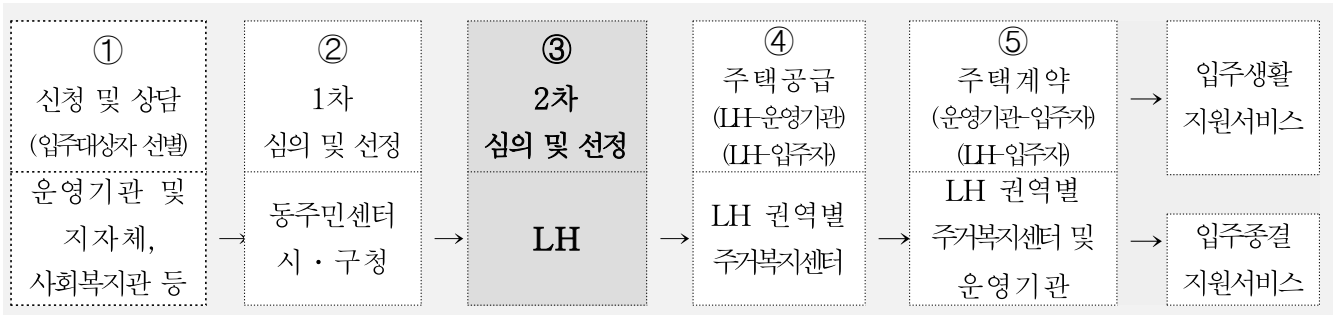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배점
연속거주 기간	동일한 거주지에 1년 이상		10	
	동일한 거주지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5	
부양가족	3인 이상		20	
	2인 이상		15	
	1인 이상		10	
공급신청자 나이	60세 이상		20	
	60세 미만 40세 이상		15	
	40세 미만 30세 이상		10	
소득	기준소득(하단참조)의 80% 이하		30	
	기준소득의 80% 초과 100% 이하		15	
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지속 근로한 자		30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자			
	(노숙인 대상 그룹홈에 3개월이상 입주하여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포함)		15	
사회복지 관련 고려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	
	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5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1,2,3급에 한함		15	
주거지원 의 필요성 (심사위원 이 평가)	주거의 불안정성	쪽방, 여인숙등 불안정 주거의 기간 / 불안정성 정도	0~15점	
	이주 후 안정된 정착가능성	알콜릭 ,정신질환, 기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	0~15점	
	임대료 부담 가능성	근로(사업)소득, 생계급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료 부담능력	0~15점	
	생활계획 및 퇴거 후 지역사회 정착계획	자활계획서의 현실성/구체성 최대 10년 거주 후 주거독립 가능성	0~15점	

□ 종합평가결과

총점수	지자체에서 최종 점수를 기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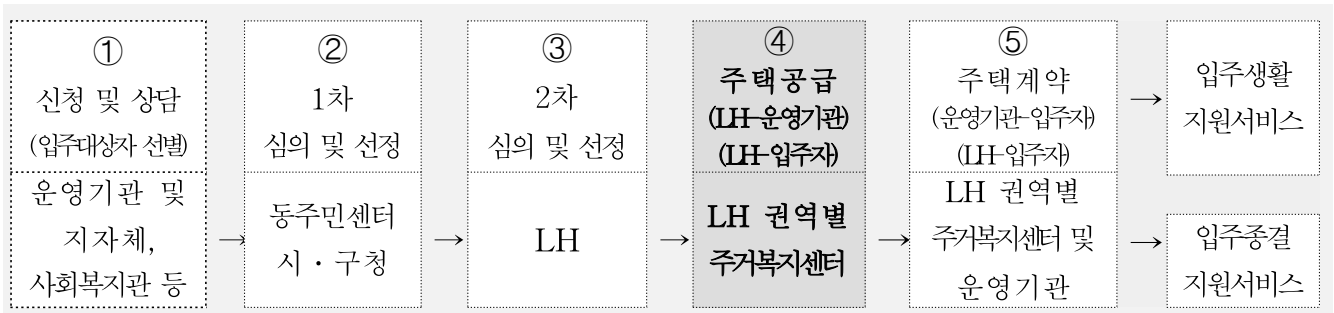
* 평가점수의 합이 90점 미만인 자는 입주대상자로 부적절한 자로 분류

③ 2차 심의 및 선정(입주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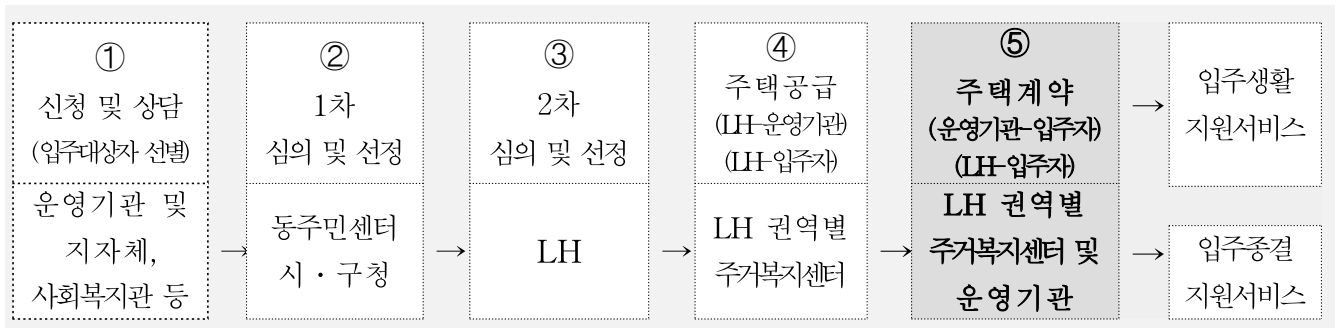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군·구의 장이 제공한 선정명단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와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심의.
-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LH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대상자를 입주자로 최종선정. (각 운영기관 등의 담당자가 직접 LH 주거복지센터에 유선으로 확인 필요)

④ 주택 공급(LH-운영기관, LH-입주자 간 임대차계약)



- 운영기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자격 선정 결과를 통보 후, 입주보증금을 입주선정자로부터 기관 통장으로 접수, 임대보증금 500,000원의 10%를 사전에 LH 전용계좌에 송금한다.
- LH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신청자의 거주지역 및 연접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시·군·구청으로 발송. 입주선정자가 LH가 지정한 날에 주택을 볼 수 있게 하며, 선정자가 최종적으로 주택을 선택하면, 임대보증금 500,000원의 10%를 사전에 LH 전용계좌에 송금한다.
- 기관 서류(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금 입금확인증)를 구비하여 해당 LH 주거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운영기관에서 보관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자의 경우, LH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계약금(최소 입주보증금의 10%) 입금확인증 등)

⑤ 주택 계약(운영기관과 입주자의 계약 및 전입신고)



- 입주계약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자의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 운영기관은 입주자와 호별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를 하며, 입주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
- 운영기관 입주계약서, 전입신고가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관, 매 2년마다 갱신 계약 시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자 카드와 전입신고가 기록된 등본을 주택 관할 지역 LH 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입주 지속여부를 심사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자의 경우는 LH 주거복지센터에 문의

입주계약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이하“임대인”이라고 함)와 “임차인”(홍길동)은 서로 간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00구 00로0길 신주소 기입
임대할 부분	000호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보증금)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임차보증금: 보증금 금오십만원정(₩500,000), 월임대료: 금팔만삼천칠백육십원정 (₩83,760)
- 보증금납부일 : 201 년 0월 00일,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납부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0 년 0월 00일부터 2010 년 0월 00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3조(건물의 인도) 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2018 년 0 월 00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구조변경, 전대등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연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제9조(붙임 1.)에 의거 선정된 입주 대상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며, 재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제6조(중도퇴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붙임 2.)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퇴거조치를 통보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체납되고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3. 층간소음유발과 기물파손행위 등 공동사회생활을 심히 저해하여 다수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4. 임대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임대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방문 또는 면담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6.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서약서 및 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4조(붙임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임차인의 관리의무)

1.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입주자 실태조사 및 주택 보수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고의, 과실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을 파손·멸실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제9조(계약의 범위) 이 계약서는 붙임1, 붙임2, 붙임3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서에 서명·날인 전에 계약내용을 확인 및 동의한다.

2010 년 0 월 00 일

임대인	주 소	기관주소로상				
	성 명	00센터 (인)	사업자번호	기관번호	전화번호	00-0000-0000
임차인	주 소	서울시 00구 00로00길 00번지, 000호 (입주 전 살던 비주택 주소)				
	성 명	홍길동 입주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1234	전화번호	010-1234-5678

도장

붙임 1.

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3개월 이상 거주(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3.4.12.>

1. 쪽방
2. 고시원, 여인숙
3. 비닐하우스
4. 노숙인 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정 2014.4.21.>
5. 컨테이너, 움막 등 <신설 2015.12.28.>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토지 또는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2.> <개정 2014.4.21.>

④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5.8.>

제9조(입주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4 입주자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2. 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3.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별지5 입주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⑤ 시장 등은 자활실적·가구원 수·소득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임대 보증금 감면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제59회 국정과제회의(2005.4.27)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으로 시범 공급되어 임대 중인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⑦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유형결정
2. 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

붙임 2.

- 제 13조(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①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운영기관을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 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계약 체결 전까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계약 시에도 또한 같다.
- ⑤ 사업시행자는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 ⑥ 공급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여야 하며, 그 밖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붙임 3.

제 14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급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에 입주 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5.8>
 8. 운영기관이 입주대상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경우
 9.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10.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공급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급주택의 명도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